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통보국가: <u>호주</u>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DCCEEW(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및 수자원부)
3. 조항 2.9.2 [X], 2.10.1 [], 5.6.2 [X], 5.7.1 [], 3.2 [], 7.2 [], 기타에 근거해 통보:
4. 해당제품(HS 또는 국정세율 품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CER(소비자 에너지 자원)은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건물 등 고객의 부지 내 계량기 뒤에 위치하여 고객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의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의미한다. CER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형 태양광: PV(태양광 발전)• EMS(에너지 관리 시스템)• 가정용 및 지역사회용 배터리: 배터리, 플라이휠(fly-wheels) 등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EV(전기차) - 승용차 및 경상용차• EVSE(전기차 충전 장비) - EVSE 부하 전용 및 양방향 EVSE를 포함한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및 구성요소• 유연 부하 - 전기 온수기, 수영장 펌프, 에어컨, 스마트 기기 등을 포함한 제어 가능한 부하 참고: 본 협의에서 다루는 상호운용성 표준은 PV 패널이 아닌 인버터에 적용된다.
5. 제목(페이지수, 언어, 열람 방법): 국가 CER(소비자 에너지 자원) 로드맵 - 기술 우선순위에 대한 협의 (32페이지, 영어), (56페이지, 영어)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AUS/25_05760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AUS/25_05760_01_e.pdf 협의를 위한 2건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동일 문서에 대한 웹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Consultation on Draft Prototype CER 프로토타입 국가 기술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에 대한 협의: https://storage.googleapis.com/files-au-climate/climate-au/p/prj3737dfec9a5ee2d441175/page/National_Technical_Regulatory_Framework_Draft_prototype_PDF_683KB_.pdf CER(소비자 에너지 자원) 상호운용성에 관한 기술표준 협의: https://storage.googleapis.com/files-au-climate/climate-au/p/prj3737dfec9a5ee2d441175/page/Technical_Standards_for_Consumer_Energy_Resources_CER_I interoperability_Consultation_Paper_PDF_1.4MB_.pdf

- 6. 내용:** 호주는 국가 CER(소비자 에너지 자원) 로드맵에 따라 두 가지 관련 문서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는 CER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표준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선적인 격차를 파악하고, 기기 간 상호운용성과 유연성을 지원하기 위한 합의된 초기 요구사항 및 적용 가능한 기술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탐색적 협의이며, 그 자체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두 번째는 소비자 중심의 제안 프레임워크와 주요 규제 기능(예: 국가 CER 기술 요건 및 표준 수립, 장치 및 설치자 인증, 연결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 무결성 지원)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는 CER에 대한 프로토타입 국가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이다. 이는 각 관할지역 전반에 걸쳐 CER의 일관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토타입은 논의를 위한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의무 요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 이 협의는 단계적 과정의 초기 단계이다. 2025년 말까지 에너지 장관들은 합의된 초기 기술 요건과 프로토타입 규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예정이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자발적인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경로가 개발 중에 있으며, 2026년에 시작되어 국가 규제 프레임워크가 시행되기 전인 2027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향후 작업에서는 차량-전력망 통합을 포함하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호운용성 요구사항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규제 기관 설립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본 작업의 목적은 가정용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스마트 기기 등 CER(소비자 에너지 자원)을 호주 전력 시스템에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CER의 활용 확대는 소비자의 선택권 증가, 에너지 비용 절감, 배출량 감소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상호운용성, 전력망 보안, 시스템 신뢰성 측면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작업은 기존 표준의 격차를 확인하고 국가 기술 요건을 수립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만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품질 요구사항, 국제표준과의 조화
- 8. 관련 문서:**
- DCCEEW '해브유어세이'('Have Your Say') 웹페이지에는 통지 문서에 대한 링크와 협의에 대한 추가적인 배경 정보, 기타 자료 및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다: [National Consumer Energy Resources \(CER\) Roadmap - Consultation on technical priorities -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Environment and Water](#)
- 9. 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
시행 예정일: 추후 결정
- 10. 의견 제출:**
의견 마감일: 2025-09-30
 [] 통보일로부터 60일
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WTO TBT 질의처
국제무역협상국
외교통상부
Canberra
전화: +(61) 2 6261 1111
이메일: tbt.enquiry@dfat.gov.au
웹사이트: <https://www.dfat.gov.au/>